

# 수입 후 가격의 변경 &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2024. 03. 08.

관세인재개발원 이창민

## I. 수입 以後 가격 변경

- I -1. 협정 및 WCO 지침에서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 I -2. 해외 주요국의 '가격 변경'에 대한 입장
- I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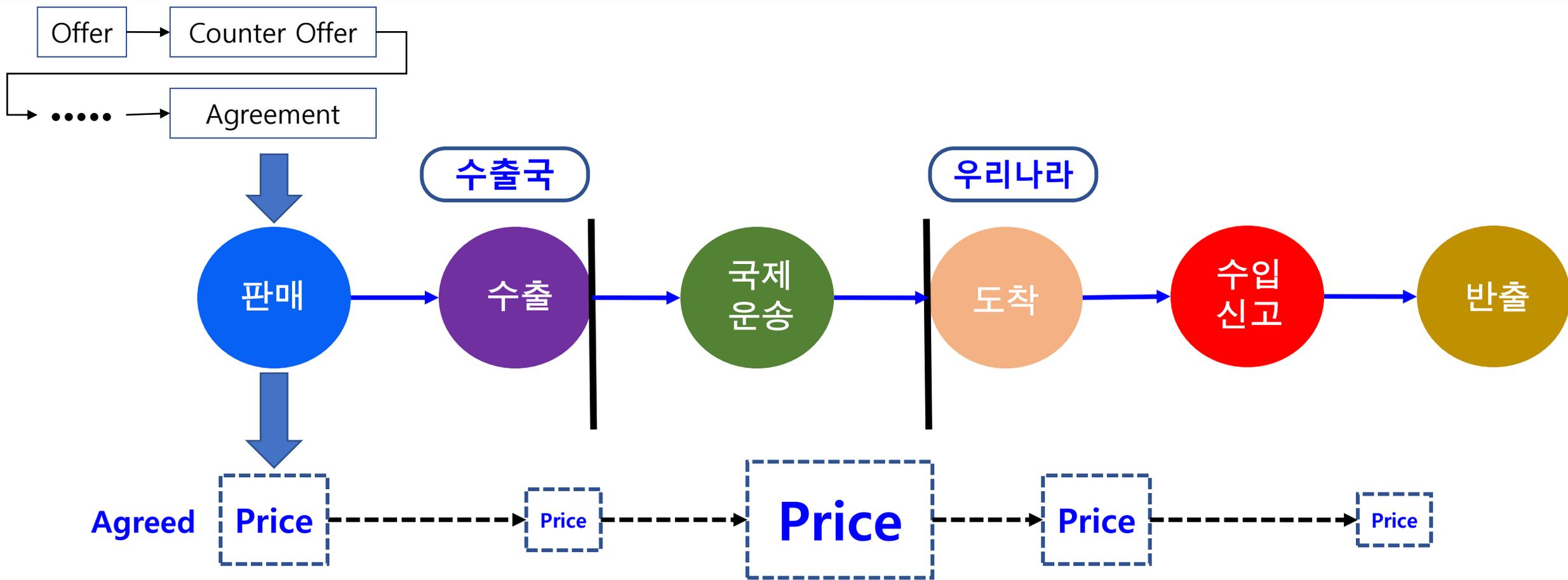
## II.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 II-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경과) 및 문제점
- II-2. TP 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III. 개선방안

# Part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 Part 1. Intro. 가격의 변경



# Part 1. Intro. 가격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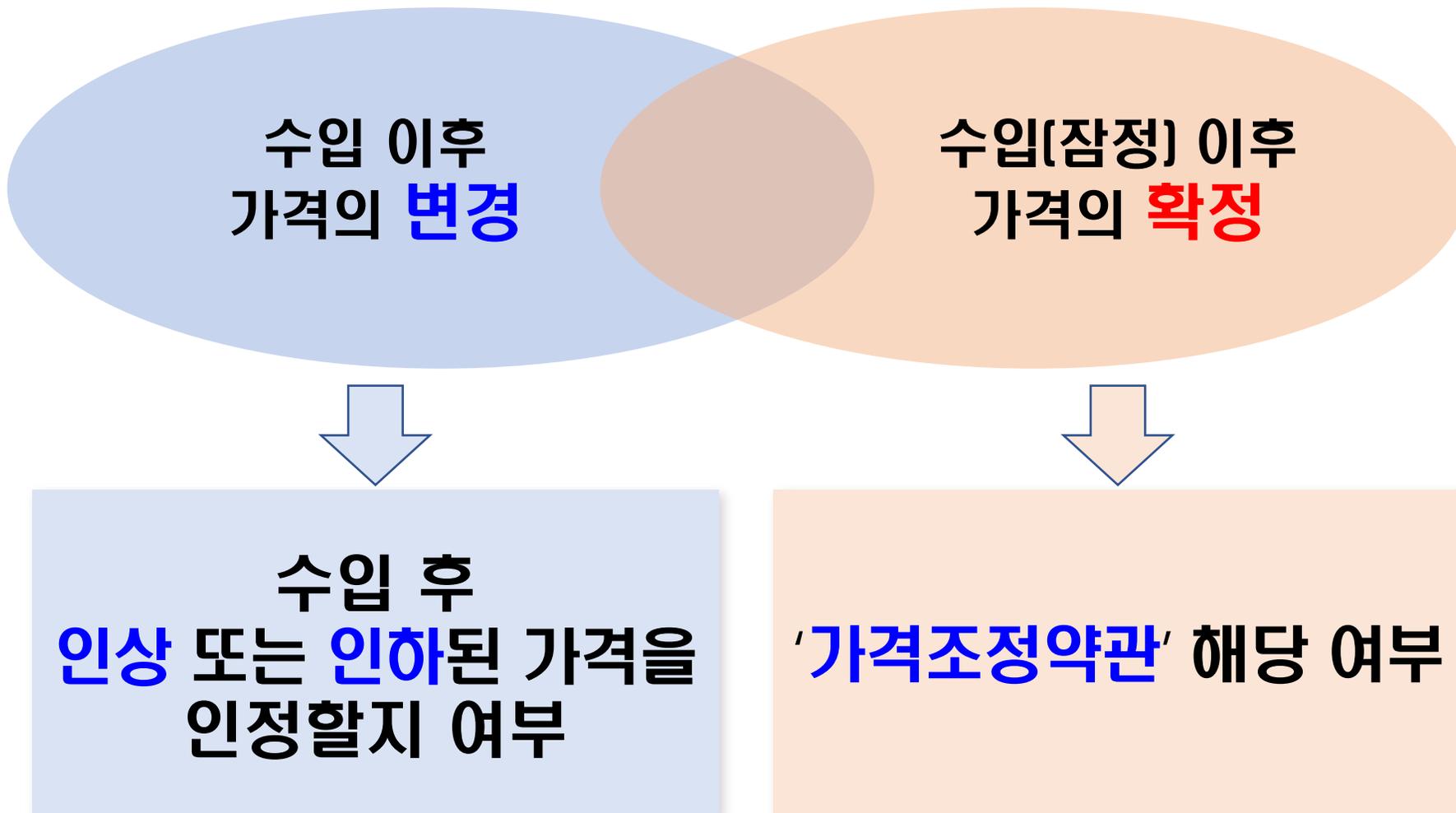
Q1. **가격(price)**은 계약 체결에서 그 이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는가?

Q1-1. **가격**이 변경되면 **별개의 다른 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Q2. 수입 후 **가격(price)**의 변경은 과세가격 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Q3. 수입 후 **가격(price)**의 변경이 **상향**인지 **하향**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 Part 1. Intro. 가격의 변경



# Part 1. 1. 협정 및 WCO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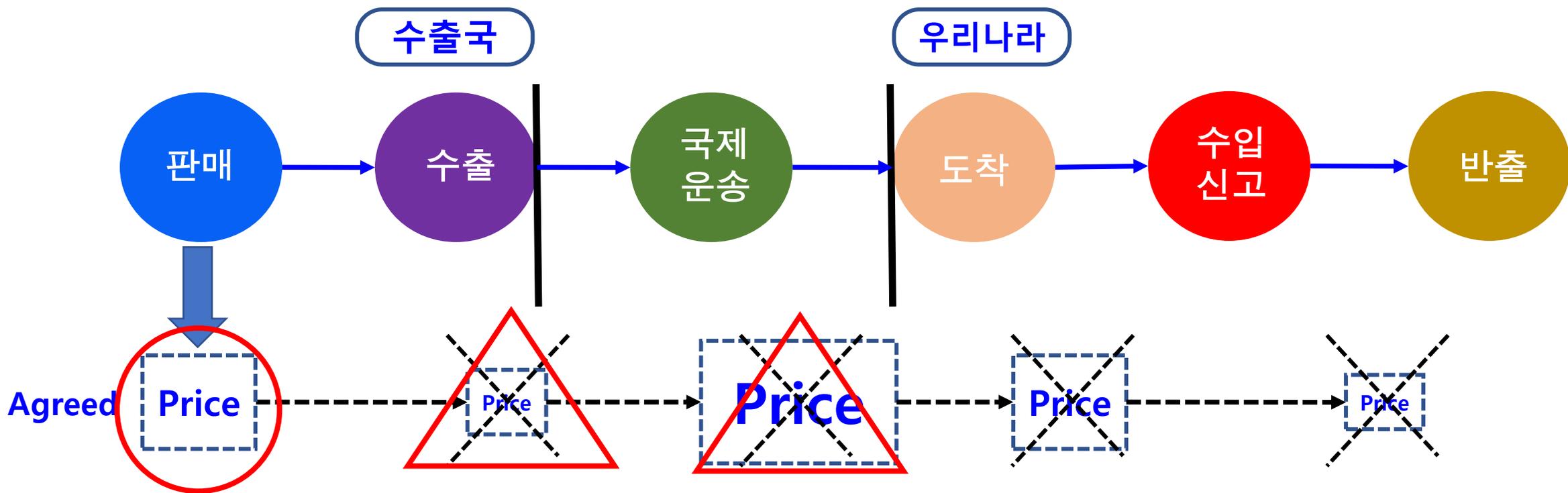
## 협정 Article 1

1.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that i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8, ... (협정 §1.1)

## 해설 1.1

“...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거래에 대한 **외부적 시간 기준(a time standard external)은 없으며**,  
 ...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 ‘when sold’란 시간에 대한 지시를 주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관련된 거래의 유형(the type of transaction involved)’**을 말하는 것이다”

# 1. 협정 및 WCO 지침



*“Generally,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established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therefore, a renegotiation of that price subsequent to exportation w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Sheri Rosenow 외)*

## 권고의견 8.1 종전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

“... The decision whether adjustment may be made to the value of the previous shipment will depend on national legislation.”

##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의 처리

“Example 3 ... As to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Customs to the 27 units guidance is already provided in A.O. 8.1 on credits in respect to earlier transaction and Commentary 4.1 on price review clauses.”

\* 27개 구매 후 추가 42개 구매 → 누적 구매수량 50개 초과 → 42개 8% 할인 & 종전 27개 3% 소급할인

# 1. 협정 및 WCO 지침

## ★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협정 및 WCO 지침 해설 요약

구분	규정 및 해석 (👉 의견)
협정 제1조	' <i>when</i> sold ...' 시간 기준으로 해석 시, 👉 판매계약 체결 이후 가격 변경 불인정
해설 1.1	' <i>when</i> sold ...' 는 외부적 시간 기준이 아니라 관련 거래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 <i>에서의</i> 가격'을 의미
예해 4.1	판매계약에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s)'이 있는 경우 👉 수입 후 가격의 조정 (상향이든 하향이든 모두) 인정
권고의견 8.1	'종전거래 관련 채권(credit)' (할인이나 rebate 등) 👉 종전거래 수입물품에 대해 <b>국가별 법령에 따라 처리(인정) 가능</b>
권고의견 15.1	'소급 할인' (할인 요건 사후 충족) 👉 <b>국가별 법령에 따라 처리(인정) 가능</b> (가격조정약관으로도 가능)
권고의견 14.1	'공해 상 체결된 판매계약'도 수출판매로 인정 👉 수입국 도착 이전 변경된 가격도 인정 가능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1) 미국

19 U.S.C. §1401a-value (b)(4)(B) Any rebate of, or other decrease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hat is made or otherwise effected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after the date of the importation of the merchandise in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under paragraph (1).

### 19 C.F.R. Part 152. SubPart E §152.103 Transaction value

(a)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1) General. In determining transaction value,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ill be considered without regard to its method of derivation.

It may be the result of discounts, increases, or negotiations, or may be arrived at by the application of a formula, such as the price in effect on the date of export in the London Commodity Market.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1) 미국

### S.A.A. Transaction value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shall be considered without regard to its method of derivation. It may be the result of discounts, increases, or may be arrived at through some **formula**, or may be the result of negotiations. ,, (Regulation)

**Change in a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hich are arrived at subsequent to the time of import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a transaction value.

**This would apply to renegotiation, deferred quantity discounts, or rebates.** (State)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1) 미국

- ◆ **계산식(formula)**에 대한 **3가지 요건** (542701, 1982.4.28. TAA No. 47)
  - ① **Formula**는 물품의 **수입 시점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 ② 최종 가격은 어떤 **미래의 사건(future event)**에 의해 **확정**되고,
  - ③ **그 사건(사실)**은 양 거래당사자가 **통제(control)**할 수 없어야 한다.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1) 미국

◆ **할인(discount)이나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인정 요건 3가지**  
 (HQ H215556, 2012.7.17., H240546, 2014.7.28. 외 다수)

- ① 할인이나 가격조정은 **수입 이전에 합의**되어야 하고,
- ② 수입자는 할인의 존재와 수입 이전 합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서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 ③ 할인이나 가격 조정은 **비조건적**이어야 하고, **조건적인 경우** 모든 조건이 **수입 이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 ☞ 소급 수량 할인 불인정

"A retroactive volume discount received after the importation of the merchandise is not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543662, 1986.1.7.)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2) EU

### UCC IA §130-Discounts (Article 70(1) and (2) of the Code)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rticle 70(1) of the Code, discou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f, at the 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the sales contract provides for their application and their amount.
2. Discounts for early paymen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ith regard to goods for which the price has not actually been paid at the 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3. Discounts arising from amendments to the contract subsequent to the 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3) 캐나다

### Customs Act §48 –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5) The price paid or payable in the sale of goods for export to Canada shall be adjusted  
 (c) by disregarding any rebate of, or other decrease in,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that is *effected* after the goods are imported.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3) 캐나다

### ◆ D13-4-10 Price Reductions (2018.2.6.)

#### 가격인하의 처리

4. 수입시점에 가격 인하가 **유효한(in effect)** 경우, 해당 가격인하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하 'PPP')을 계산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6. CBS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수입 후 발생하는 PPP의 인하를 수용한다:
  - (a) 구매자가 수입에 앞서 판매자가 제시하는 현금 할인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 (b) PPP를 사후에 인하하는 서면 계약이 수입 시점에 유효(in effect)하였고, 해당 인하가 해당 계약에 기인하는(results from) 경우.
11. 법 제48조(5)(c)는 물품이 캐나다로 수입된 시점에 **효력이 있고 서면으로 된 계약**에서 비롯되는 PPP에 대한 인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3) 캐나다

### ◆ D13-4-10 Price Reductions (2018.2.6.)

#### 이연 할인(Deferred Discounts)

12. 이연 할인은 구매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할 때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소급 할인이다. 수입 이전에 협상되거나 제공되는 그러한 할인은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에 존재했던 (existed) 서면 계약에서 비롯되는(ensues) 경우 수입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것(in effect)으로 간주된다.

13. 예를 들어, 구매자는 개당 \$100의 가격으로 1,000대의 자전거를 구매하기로 외국 판매자와 계약을 맺는다.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추가 수량의 구매를 위한 판매자의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특정 기간 내에 추가 수량을 주문할 경우 판매자가 모든 구매에 대해 단위가격의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특정 기간 내에 추가 수량을 주문하여 판매자가 첫 번째 구매된 1,000개에 대해 소급 할인(retroactive discount)을 제공하는 경우, PPP는 개당 \$10씩 인하될 수 있다.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4) 일본

(실제지급가격의 의미와 취급)

4-2 (3) 라.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부여되어 있는 **가격조정조항**의 적용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송품장가격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실제지급가격은 **조정 후의 가격**이 된다...)

(별도 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실제지급가격 산출)

4-2의2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송품장가격과 실제지급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는 4-2(3).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입물품과 관련된 송품장가격의 지급에 더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어떤 지급(이하, '**별도지급금**')이 있는 경우의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송품장가격에 **별도지급금을 더한 가격**이다.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4) 일본

(별도 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실제지급가격 산출)  
 4-2의2 (계속)

(2)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송품장가격을 지급한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부여되어 있는 **가격조정조항의 적용** 등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별도지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송품장가격에 해당 **별도지급금을 더한 가격**이다. ... **납세신고를 한 후**에 해당 조정이 이루어지고 별도지급금이 지급될 때도 **동일**하다.

(3)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송품장가격을 지급한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부여되어 있는 **가격조정조항의 적용** 등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지급액의 일부가 구매자에게 **반환**된 경우의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송품장가격에서 **반환금을 공제한 가격**이다. ... **납세신고를 한 후**에 해당 조정이 이루어지고 구매자에 의한 반환금의 수령이 이루어진 때도 **동일**하다.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4) 일본

#### ◆ '가격조정조항'에 따른 '별도지급금'이나 '반환금' 인정 요건

- ① 수입거래에 기인하는 것일 것
- ② 수입물품과 대응관계가 명확할 것
- ③ 별도지급금 또는 반환금의 액수가 명확하고, 그 지급수령 사실이 존재할 것

### cf) 미국

#### ◆ **계산식(formula)**에 대한 **3가지 요건** (542701, 1982.4.28. TAA No. 47)

- ① **Formula**는 물품의 **수입 시점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 ② 최종 가격은 어떤 **미래의 사건(future event)**에 의해 **확정**되고,
- ③ **그 사건(사실)**은 양 거래당사자가 **통제(control)**할 수 없어야 한다.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 주요 국가들의 '수입 후 가격 하향 조정'에 대한 법령 규정

구분	규정 (공통)
미국 19 U.S.C. (관세법)	§1401a-value (b)(4)(B) “ <u>Any rebate of, or other decrease</u>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hat <u>is made or otherwise effected</u>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u>after the date of the importation</u> of the merchandise in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under paragraph (1)”
EU UCC IA (관세법 시행령)	§130(discount) “3. <u>Discount arising from amendments</u> to the contract <u>subsequent to the 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u> ”
캐나다 Customs Act (관세법)	§48(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5)(c) by <u>disregarding any rebate of, or other decrease in,</u>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that is <u>effected after the goods are imported.</u> ”

# Part 1. 2. 해외 주요국의 가격의 변경에 대한 입장

## ☆ 주요 국가들의 '수입 후 가격 하향 조정'에 대한 실무적 처리 현황

구분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수입후 가격 조정		판매계약에 근거한 수입후 가격 조정		판매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재협상 등 수입후 가격 조정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미국	조정 인정 (formula의 미래사건, 변수는 양 당사자 통제 불가)		인정	수입 이전 합의 & 조건충족시 인정 (소급할인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EU	-		-	수입신고수리전 유효시 인정 (소급할인 불인정)	-	불인정
캐나다	조정 인정 (price escalation clause; formula와 같은 구체적 요건 없음)		인정	수입시 서면계약 유효한 경우 인정 (소급할인 인정)	-	불인정
일본	조정 인정 (수입거래에 기인, 별도지급/반환금액 명확, 실제 지급/영수)		인정 (소급인상도 인정)	인정 (소급할인 인정)	인정 (소급인상도 인정)	인정 (소급인하도 인정)

# Part 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1)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 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 Part 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1) 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실제지급가격) ②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Part 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2) 실무 처리 현황

### 수입 후 가격 인하 (할인, rebate)

“...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화된 가격**의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볼 수 없음**” (재경부 관협47040-112호, 1998.6.10)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 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됨” (관세청 평가분류47221-131호, 2001.2.6.)

# Part 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2) 실무 처리 현황

### 수입 후 가격 인상 (추가 지급)

“...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재경부 관협47040-310호, 2001.12.14)

“... 수출자의 가격인상 결정에 따라 수입 이후 수입자가 추가 지급한 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

반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할인이나 가격인하는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만이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하며, 수입 이후의 할인이나 가격

인하는 수입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됨” (분류원, 민원질의-2018-22호, 2018.12.28.)

# Part 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2) 실무 처리 현황

### 가격조정약관

“... .. 판매가격 요소 중 물품의 가격과 관련없는 수입자의 이윤을 어떻게 산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커미션, 금융 및 이자비용의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본 건 정산금 산출공식은 판매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수입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어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음” (분류원 사전심사-2020-12호, 2020.11.2.)

☞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  
 국내판매가격 등을 변수로 하거나 손익을 나누는 계약 등은 ‘가격조정약관’으로 불인정

# Part 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3) 문제점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법령 규정 미비
2. 수입 이후 가격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에 대한 실무처리 관행의 논리적 근거가 서로 모순
3. 가격조정약관 인정 기준, 특히 거래당사자의 통제(control) 여부에 대한 해석이 너무 엄격함

## Part 2.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2011년 이전

“...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됨”

(재경부 관협47040-310호, 2001.12.28.)

☞ TP사후보상조정 **지급액** :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

TP사후보상조정 **영수액** :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 불가(감액 결정 거부)**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2011년 이후

“... 수입신고수리후에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의 성격은 영업이익(손해보전), 수입대가,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 바, ... 법인심사과-1322('11.8.1.) 질의회신 건은 민원인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송금한 금액이 “수입대가”가 아닌 단순히 판매량의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송금한 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 판단하시기 바람”

(관세청 법인심사과-1483호, 2011.8.29.)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2011년 이후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 이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 조정이 아닌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며...”

(관세청 법인심사과-418호, 2012.3.9.)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2011년 이후

“...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일정기간 동안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실현한 해당 회계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사후에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이전가격은 ...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수입물품의 최종가격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당초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경우로서,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가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된 영업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신고건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동 추가지급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273호, 2012.9.3.)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2017년 7월 TP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 도입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3호,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 (**형식적 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춘 경우

1. **ACVA**에 의해 **제1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APA**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 산출방법 설명 자료

- 판/구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해 합의한 **계약서, 내부지침** 등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검토보고서(**TP Study**)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통보 내역** 또는 **APA 승인내역**

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기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2017년 7월 TP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 도입

[2016.5. 청 법인심사와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추진계획' 중 발채]

“이전가격 책정체계는 OECD TPG와 국조법 및 일반적 회계기준에 의해 투명성 검증 가능 → 관세행정에 수용 가능 (미국, 캐나다 등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변화)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자료가 관세평가 규범상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될 조건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사후보상조정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으로 인정하는 세관신고절차 마련 필요”

[2017.3.27.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1) 입장 변화

### 현행 관세청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 처리 지침」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

- 1)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의4에 따라 거래가격 부인
- 2)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 해당 시 : 제2방법 이하 결정
- 3) **가격조정약관 요건**(「규칙」 제3조의 잠정가격신고 요건과 동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으로 가산 또는 공제(±)**
- 4)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계량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
- 5)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손익의 조정**인 경우 **비과세** (수입물품가격이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거나, 사후보상조정과 수입물품 간 관련성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 법인심사과-1888호(2019.12.6.)

# Part 2. 1. 우리 관세당국의 입장 및 문제점

## (2) 문제점

1. TP사후보상조정 지급 또는 영수 금액의 **발생원인** 또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판단 기준 모호 → **세관 & 납세자 모두 혼란 지속**
2. 개별 사안별 '실제지급가격', '사후귀속이익', '물품과 무관한 손익 조정' 모두 처리 가능하다는 **현행 지침** & TP사후보상조정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수용한 **2017년 3월 법령 개정 취지**와 **불부합**
3. TP사후보상조정 **지급액**을 **소득의 조정**으로 관세 비과세 → **내국세 과세대 상에서 제외** & 관세 과세가격에서도 제외 → **합법적 국부유출**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1) 이전가격 이란?

### 이전가격 (Transfer Price)

-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그 밖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 #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 책정**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1) 이전가격이란?

### 이전가격 (Transfer Price)

※ 국조법 '거래가격'

-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그 밖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 #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 책정**

### 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

-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국조법 제2조)
- # **Arm's Length Principle : 독립기업 원칙**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1) 이전가격 이란?

**정상가격 산출방법** ≠ **이전**가격 산출방법

구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산출되는 값(지표)
전통적 거래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b>U</b> ncontrolled <b>P</b> rice	독립된 제3자 간 거래 <b>가격</b>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b>P</b> rice <b>M</b> ethod	구매자의 통상 <b>이익</b> (재판매이익률)
	원가가산방법 Cost <b>P</b> lus <b>M</b> ethod	판매자의 통상 <b>이익</b> (원가가산율)
거래 이익 방법	이익분할방법 Profit <b>S</b> plit <b>M</b> ethod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b>이익</b>
	<b>거래순이익률법</b> Transaction <b>N</b> et <b>M</b> argin <b>M</b> ethod	통상의 거래순 <b>이익</b>

- ✓ 법인세
- ✓ 한 기업의 사업연도 동안 전체 거래에서 순이익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1) 이전가격 이란?

### 이전가격 세제의 기본 개념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것

<p>이전가격 세제의 목적</p>	<p>특수관계자들 간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인 ‘<b>이전가격</b>’이 ‘<b>독립기업 원칙</b>(arm’s length principle)’에 <b>부합하게 책정</b>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p>
<p>이전가격 세제의 수단</p>	<p>‘<b>정상가격 산출방법</b>’에 의해 <b>산출</b>되는 영업이익률 등 <b>이익률</b> 수치는 실제 <b>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b>하기 위한 수단이다.</p>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2)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이란?

관계기업들 간에 책정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조정**하는 것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2)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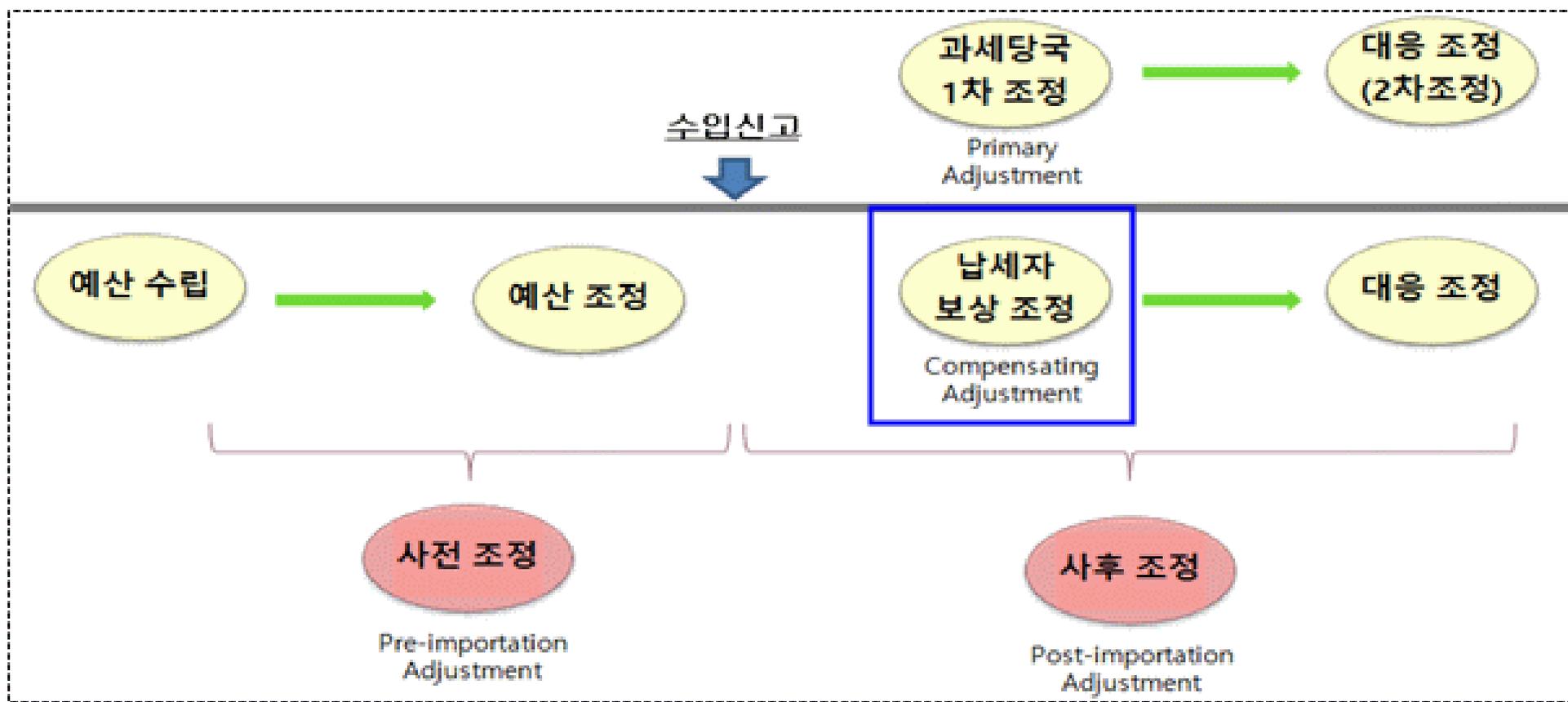
### ☆ 이전가격 조정의 유형

조정 유형	내용
일차 조정 (Primary adjustment)	·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도록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무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정
보상조정 (compensating adjustment) (실제가격 조정)	· 납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조정(Self-adjustment)으로, 독립기업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실제 이전가격이 조정된다. 이는 납세자의 계정에 기록될 가격 조정 및 발행되는 차변표/대변표(debit/credit note)를 포함한다.
보상조정 (compensating adjustment) (국세 목적상)	· 납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조정(Self-adjustment)으로, 여기서 납세자는 특수관계 기업이 실제 부과하는 금액과 다른 국세 목적상 이전가격(정상가격)을 보고하게 됨
대응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 한 관계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 관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들간 수익배분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차조정에 대응하여 한 관계기업 조세 채무 (tax liability)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조정
이차 조정 (Secondary adjustment)	· 이차 거래(secondary transaction) 즉, 일차조정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실제 배분하기 위하여 의도된 의제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로부터 발생하는 조정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2)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이란?

### ☆ 이전가격 조정의 유형 (시기적 구분)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2)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이란?

#### 점진적 조정 (prospective adjustment)

회계연도를 반기 또는 분기로 나누어, 분기 또는 반기의 실현 이익이 예상되는 정상가격 범위의 이익률을 벗어난다면 **향후 다음 분기 또는 하반기의 TP를 조정**함으로써 회계연도말 정상가격 범위의 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점진적 조정에 따라 다음 분(반)기에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을 '손익의 조정'이라 할 수 있는가?
- TP사후보상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3) 실제지급가격의 본질

**“실제적 개념”**

(the positive concept of value)

VS.

**“관념적 개념”**

(the notional concept of value)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what the value of the goods is)

물품의 가격이 얼마여야 하는지

(what the value of the goods should be)

GATT新평가협정 / WTO관세평가협정

브뤼셀평가협약(BDV)



**실제지급가격 :**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격(agreed price)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3) 실제지급가격의 본질

- ▶ **가격이 도출된 근거 ??** :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와 무관하다. 양 당사자들이 거래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그 가격을 채택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Where Transaction Value applies, it is irrelevant how the price was arrived at. It is sufficient that the parties have adopted it a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 the transaction. The seller may have granted an exceptionally low price because the buyer resembled a deceased friend ... . The important point is that under the Code it is not for Customs to judge whether or not the businessman’s reasons for his prices are or are not valid.” (Sherman & Glashoff, 「Commentary on the GATT Customs valuation Code」, ICC, 1991, 203 para.)

\* 단, 거래가격의 요건인 ‘**조건 또는 사정**’, ‘**특수관계의 영향**’ 등 거래가격 배제사유(4가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 유의!!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3) 실제지급가격의 본질

“...수입물품에 대하여...”  
(for the imported goods)

vs.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in consideration ~~)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as a condition of sale ~)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 **지급** 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총(모든) 금액** ”

- 수입물품의 “**대가**” 인가??
  - 해설 5.1 보증확인수수료
  - 사례연구 7.1 교육훈련비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1-4) TP사후보상조정 = 실제지급가격의 사후 조정

TP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영업이익률 등 이익률 수치에 의해 계산되고,  
 그 조정의 목적이 내국세 목적 상 정상가격의 범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과  
 관계없이,

**TP조정** 금액이 '**수입물품**(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지급,  
 즉 **이전가격의 실제 조정**인 경우 이는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에 해당할 뿐이다.

수입물품(재화) 거래에 대해 이뤄지는 **TP사후보상조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사후 조정**이다.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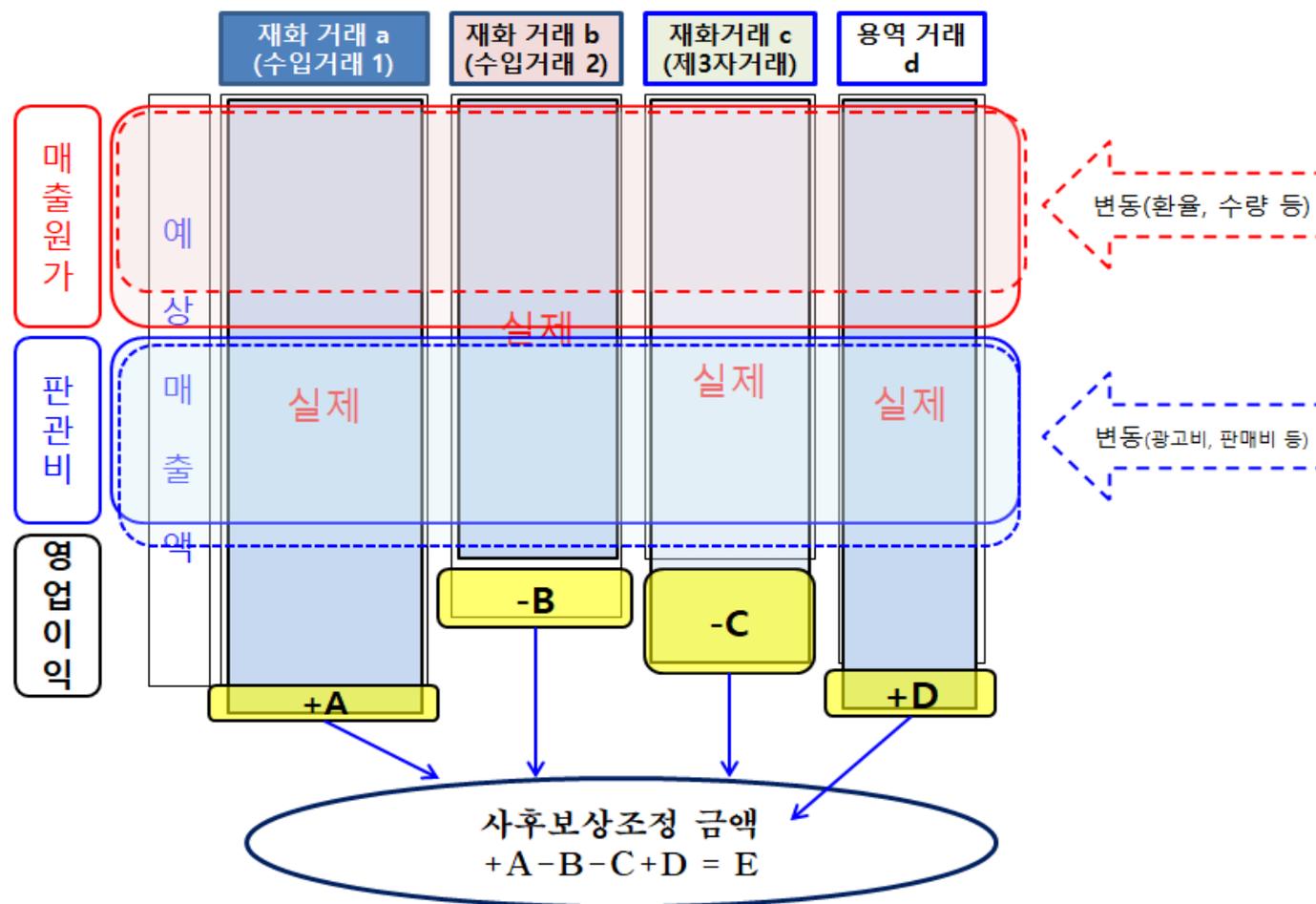
### (2) TP사후보상조정을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가?

Q. "영업이익(률)"(순이익 지표)이란 ??

- 대표적 순이익지표인 '영업이익'은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비용)의 금액일 뿐임  
(회계적 계산의 결과값일 뿐임)
  - 판매수량×단가, 매출에누리, 수입가격, 환율, 재고자산 평가, 국내판매활동(마케팅) 비용 등 한 기업의 모든 사업활동의 총체적인 결과
- ❖ TP사후보상조정을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귀결될 것임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3)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 이란?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4) TP사후보상조정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볼수 있는가?

**대법원 2019두50373 (2019.12.12.)**

“... 어떤 지급금액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려면, 수입 후 수입물품의 판매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금액**이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내국세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동안 실현한 이익의 수준이 정상가격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이전가격조정액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예상 대비 실제 판매대수 증감량과 목표 대비 실제 영업이익 증감량 사이에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 **목표 대비 실제 영업이익의 증감은 판매수량과 부가가치 영업비용 외에 다른 요소도 작용**하였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전가격조정액이 **순전히 판매대수의 증가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판매수량의 증감 외에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감, 가격 할인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5) 예상치 못한 시장상황으로 발생한 TP사후보상조정은 '소득조정'인가?

#### 사례 예시

- 수입자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오랫동안 **일정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 (다른 물품이나 용역 등 거래는 없음)
- 동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거래순이익률법**이며, 수입자는 정상가격 영업이익 범위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TP사후보상조정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특정 연도에 **국내에서 메르스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판매량 및 판매 가격이 급등**하여 수입자는 사전에 TP study를 통해 정해 놓았던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 수입가격, 환율, 판매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으며, 해당 연도 예측과도 크게 차이는 없다.
  - 사전에 정해 두었던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을 TP사후보상조정 금액으로 송금**하였다.

☞ (쟁점) 이 예시와 같이 **예상치 못한 수입국 내 시장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TP사후보상조정 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가?

## Part 2. 2. TP사후보상조정과 실제지급가격

### (6) TP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입장

- WCO Guide to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WCO, 2015.)
  - 미국 CBP **HQ W548314** (2012.5.16.) ☞ 5가지 요건 충족시 **formula로 수용**
  - 캐나다 Customs Notice 15-001 (2015.1.19.), Memorandum D13-4-5 ☞ CITT 결정 (AP-2012-067, 2014.3.21.)에 따라 "effected"의 해석 범위 확장
  - 일본 세관 질의회신 사례 no.34. '수입거래에 관한 가격조정조항의 적용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조정금)'
- ⇒ TP사후보상조정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처리 또는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



## Part 3. 개선 방안

# Part 3.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처리 기준 마련

##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 기준(안)

구분	상향 (추가지급)	하향 (할인, rebate)
<u>판매계약에 근거한</u> 가격의 변경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수입 이전에 합의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실제지급가격에서 <b>조정 허용</b> (그 외 소급할인 불인정)
<u>후발적 사정에 의한</u> <u>재협상 등에 따른</u> 가격의 변경	실제지급가격에 <b>불포함*</b>	실제지급가격에서 제외하지 <b>않음</b> (소급할인 불인정)

\* 추가지급액 불포함 및 소급할인 인정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가 부담

# Part 3.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처리 기준 마련

## (2-1) 법령 등 개정안 : 수입 이후 환불·감액 등 처리원칙 시행령 입법

현행	개정(안)	이유
<p>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간접지급금액 등) &lt;신설&gt;</p> <p>①~③ (생략)</p>	<p>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간접지급금액 등) ① 수입물품이 <u>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u> 가격에 대한 <u>환불, 감액 등</u>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에 <u>고려되지 않는다.</u></p> <p>②~④ &lt;현행과 같음&gt;</p>	<p>◆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b>일어난(발생한)</b> 가격 인하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세가격 결정원칙 명확화 (고시 제16조제2항 상향입법)</p>

# Part 3.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처리 기준 마련

## (2-2) 법령 등 개정안 : 가격 변경 상황별 처리 기준 (고시 개정)

현행	개정(안)	이유
<p>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실제지급가격)</p> <p>① (생략)</p> <p>② <del>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del></p>	<p>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실제지급가격)</p> <p>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u>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수출 판매 계약에 정해져 있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u>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u></p> <p>2. <u>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하되어 발생하는 할인, 환불금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u></p> <p>가. <u>해당 할인, 환불 등은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합의되었을 것</u></p> <p>나. <u>해당 할인, 환불 등에 대한 조건은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모두 충족되었을 것</u></p> <p>다. <u>납세의무자는 가목과 나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u></p>	<p>◆ 현행 제2항 본문 규정은 시행령으로 상향입법</p> <p>◆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 기준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항) 수출판매계약에 근거한 가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상(추가지급액)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li> <li>- 인하(할인, 환불등) : 수입 이전 합의, 조건 충족, 입증자료 제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서 감액 허용</li> </ul> </li> </ul> <p>* 미국CBP 결정 HQ H215556, H240546 등의 할인이나 가격조정 인정 기준 반영</p>

# Part 3.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처리 기준 마련

## (2-2) 법령 등 개정안 : 가격 변경 상황별 처리 기준 (고시 개정)

현행	개정(안)	이유
<p>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실제지급가격) &lt; 신설 &gt;</p> <p><del>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del></p>	<p>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실제지급가격)</p> <p>③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u>수출 판매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후발적 사정</u>에 따라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u>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u>. 다만, 가격이 <u>인상</u>되는 경우에는 수출판매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u>납세의무자가 충분한 자료를 통해 증명</u>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u>가격조정약관</u>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항) 수출판매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b>후발적 사정에 따른 가격변경</b>(인상, 인하 모두) : 실제지급가격 결정시 <b>고려하지 않음</b></li> <li>- 다만, 부정한 저가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지급액이 수출판매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b>납세자가 입증</b>토록 함</li> <li>• (제4항) 현행 제2항 단서를 제4항으로 이동</li> </ul>

# Part 3. 1.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처리 기준 마련

## (3) 법령 등 개정안 : 가격조정약관 인정 요건 완화 (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	이유
<p>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 수입 후에 가격이 <b>확정되는 경우</b>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p> <p>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p> <p>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u>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u></p>	<p>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③ &lt;현행과 같음&gt;</p> <p>3. &lt;현행과 같음&gt;</p> <p>가. &lt;현행과 같음&gt;</p> <p>나. &lt;현행과 같음&gt;</p> <p>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u>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을 것</u></p>	<p>• 가격조정약관 인정 기준 완화</p> <p>- 수입물품의 <b>국내판매 가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계약, 상당 기간 동안 제조원가와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 등 시장요인</b>에 의해 최종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을 <b>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b></p>

## Part 3. 2. TP사후보상조정 처리 개선방안

### (1) TP사후보상조정은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이라는 원칙 정립

- TP사후보상조정의 발생 원인과 실질적인 성격을 검토하여 '손익 조정' 또는 '사후귀속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2019년 관세청 지침 및 2012년 이후 질의회신 폐지
- TP사후보상조정은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이므로, '수입 이후 가격의 변경 처리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 마련

## Part 3. 2. TP사후보상조정 처리 개선방안

### (2) TP사후보상조정 상향 or 하향에 따른 기준

- '수입 후 가격 변경 처리 기준'의 '판매계약에 근거한 가격 변경' 처리 기준에 따름

<p><b>상향 조정</b> (지급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지급가격'의 추가 지급으로 과세가격에 포함</li> <li>☞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은 갖추었는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지와 무관</li> <li>☞ TP사후보상조정 금액 지급 후 일정 기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b>신고불성실 가산세(10%) 면제</b> (∵ 자발적 납세신고 유도)</li> </ul>
<p><b>하향 조정</b> (영수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조정약관'(규칙 제3조제2항) <b>요건 충족</b>하는 경우에만 <b>감액조정(환급) 허용</b> (∵ '수입 이전 할인이나 rebate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준 미충족)</li> <li>☞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 <b>요건 완화 필요</b></li> </ul>

## Part 3. 2. TP사후보상조정 처리 개선방안

### (3) TP사후보상조정 '가격조정약관' 인정 기준 완화

-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호 **ACVA 또는 APA** 승인 **형식요건 삭제**
- ② 각 **수입물품별 배분·계산 방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완화**하고, 필요적 요건이 아닌 과세가격 조정(확정신고) 시 **납세자와 세관 간 협의사항**으로 운영
- ③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요건\* TP사후보상조정 **가격조정약관 인정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 경우 **영수 금액 감액 조정(환급) 허용**

\* ①, ②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말함

## Part 3. 2. TP사후보상조정 처리 개선방안

### (4)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TP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구분·계산

- TP사후보상조정이 단일 거래(수입물품 거래)가 아닌 **여러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부분**' 구분·계산 필요
-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부분'이란 **해당 수입물품 외 다른 물품, 용역,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말함
-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부분(거래)'에 대한 **존재 여부, 구분·계산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  
**가 부담**해야 함

## Part 3. 2. TP사후보상조정 처리 개선방안

### ❖ 추가 검토 과제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구체적 개정안
- TP사후보상조정 금액 중 수입물품(거래)와 관련없는 다른 물품, 용역, 무형자산 등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에 대한 과세 및 공제 방법 및 그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 입법 방안
-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도 TP사후보상조정 영수 금액을 감액경정 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규정안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03. 08.